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2022-01-01 ~ 2022-12-31
① 법인(단체)명	사단법인 한국사랑나눔공동체	② 사업자등록번호	136-82-032**
③ 대표자 성명	이은덕	④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2017-03-01 만료일 : 2022-12-31
⑤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대문로 116-6, 102호(삼각동, 범양빌딩)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8CC33467218312A4ABA03CD56A07B5686 413DA1FAD6A06EA0C84055CBA87052F

2. 의무이행 여부

	(9) 의무	(10) 의무이행 여부	(11) 점검결과
(8)	가.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은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목적 추가됨)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 수행할 것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일 것	여	해당없음
	나. 정관의 내용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여	해당없음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	여	해당없음
	라. 공익법인등이 실제운영상 (가) 의무를 이행할 것	여	해당없음
	마.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여	해당없음
	바.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여	해당없음
	사.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할 것	여	해당없음
	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여	해당없음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여	해당없음
	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여	해당없음
	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여	해당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일 일

제출인 : 사단법인 한국사랑나눔공동체 (단체의 직인)[인]

귀하

위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④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의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정받은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